주요 노동동향

경제 및 고용 동향

◈ 2012년 5월 생산은 광공업 및 서비스업 등에서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1.6%, 전월대비 0.4% 증가

○ 2012년 5월 생산은 건설업 등에서는 감소하였으나 제조업, 금융보험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증가함.

- 제조업 생산은 영상음향통신(-6.8%), 기계장비(-2.7%), 비금속광물(-6.4%)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자동차(8.8%), 반도체 및 부품(3.4%) 등의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2.7% 증가함.
- 서비스업 생산은 부동산·임대(-4.4%), 협회·수리·개인(-3.7%)에서 감소하였으나 보건·사회복지(7.4%),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5.0%), 하수·폐기물처리(4.0%),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3.8%), 금융 및 보험업(2.9%) 등에서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2.2% 증가함.

○ 2012년 5월 소비는 전년동월대비 2.2% 증가, 투자는 전년동월대비 1.5% 감소함.

- 소비재판매액지수는 승용차 등 내구재(4.7%), 오락·취미·경기용품 등 준내구재(1.7%), 차량연료 등 비내구재(1.4%)의 판매가 늘어 전년동월대비 2.2% 증가함.
- 설비투자는 자동차, 정밀기기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일반기계류, 기타운송장비 등에서 투자가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1.5% 감소함.
- 건설기성(경상)은 토목공사는 증가하였으나 건축공사의 부진으로 전년동월대비 4.2% 감소하였으며,

건설수주(경상)는 공공부문에서 주택, 토지조성 및 발전·통신 등의 발주가 증가하였으나 민간부문에서 사무실, 기계설치 등의 발주가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4.4% 감소함.

○ 현재의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비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증가하였으나 건설기성액, 서비스업생산지수 등이 감소하여 전월대비 0.5p 하락하였고,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수출입물가비율, 소비자기대지수 등은 증가하였으나 기계류내수출하지수, 건설수주액 등이 감소하여 전월대비 0.4p 하락함.

◈ 2012년 6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2.2% 상승(생활물가지수 1.8% 상승)

○ 2012년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6.1(2010=100)로 나타나 전월대비 0.1% 하락하였고, 전년동월대비 2.2% 상승하여 2012년 3월의 2.6% 상승 이후 4개월 연속 2%대 시현

– 소비자물가지수의 지출목적별 동향을 보면, 전년동월대비 기타상품 및 서비스(-4.4%), 통신(-3.4%) 부문만 하락하였고, 의류 및 신발(5.6%), 식료품 및 비주류음

〈표 1〉 최근 경제일반 동향

(단위 : %,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2009					2010					2011						2012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p	연간	5월	1/4	5월p
생산	광공업 생산	-15.7	-6.1	4.3	16.2	-0.8	25.8	19.5	10.9	11.7	16.2	10.4	7.2	5.3	5.0	6.9	8.3	3.8	2.6(1.1)
	제조업 생산	-16.5	-6.6	4.4	16.8	-0.9	26.8	20.2	11.2	11.9	16.3	10.6	7.4	5.1	5.3	7.0	8.5	4.2	2.7(1.1)
	출하	-14.9	-5.8	2.1	12.8	-1.7	21.8	17.2	9.9	11.9	14.3	11.9	7.2	4.9	3.5	6.7	8.2	3.3	3.4(0.5)
	내수	-15.7	-5.9	3.4	12.3	-1.8	21.2	15.4	6.6	8.3	11.5	6.8	3.8	2.7	0.2	3.3	5.9	0.3	0.0(0.6)
	수출	-13.8	-5.7	0.4	13.3	-1.7	22.5	19.7	14.5	16.9	18.1	18.1	11.6	7.7	7.2	10.8	11.0	6.7	7.2(4.0)
	서비스업생산	-0.3	2.4	1.9	3.7	2.0	5.7	4.0	2.3	3.1	3.9	2.8	3.3	4.5	2.7	3.3	2.9	2.5	2.2(0.2)
소비	소비재 판매	-4.7	1.5	2.8	10.8	2.6	9.9	4.9	7.5	5.1	6.7	5.4	5.7	4.7	1.9	4.3	6.1	2.0	2.2(0.7)
투자	설비투자	-17.9	-12.9	-9.9	10.2	-8.2	25.5	24.5	29.3	13.5	24.2	5.4	4.8	-3.1	-4.7	0.7	11.7	9.4	-1.5(-0.8)
물가		3.9	2.8	2.0	2.4	2.8	2.7	2.6	2.9	3.6	3.0	4.8	4.2	4.8	4.0	4.0	4.2	3.0	2.2(-0.1)

주 : 1) 광공업 생산은 광업(C), 제조업(D), 전기·가스업(E, F)을 포함하나 거의 대부분 제조업을 대변함.

2)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9차 개정, 2007.12.28)상의 13개 대분류(도소매업(G), 운수업(H), 숙박 및 음식점업(I),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 및 임대업(L),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N),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O), 교육서비스업(P),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S),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를 포괄하며, 이 중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산업에서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은 제외함.

3) 물가상승률은 6월 기준임.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및 『소비자물가동향』, 각호.

료(5.2%), 주택·수도·전기·연료(4.4%), 교통(4.2%) 부문 등을 중심으로 상승함.

– 2012년 6월 생활물가지수는 105.8을 기록하여 전월대비 0.3% 하락하였고, 전년동월대비 1.8% 상승함.

〔그림 1〕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증가율

(단위 : %,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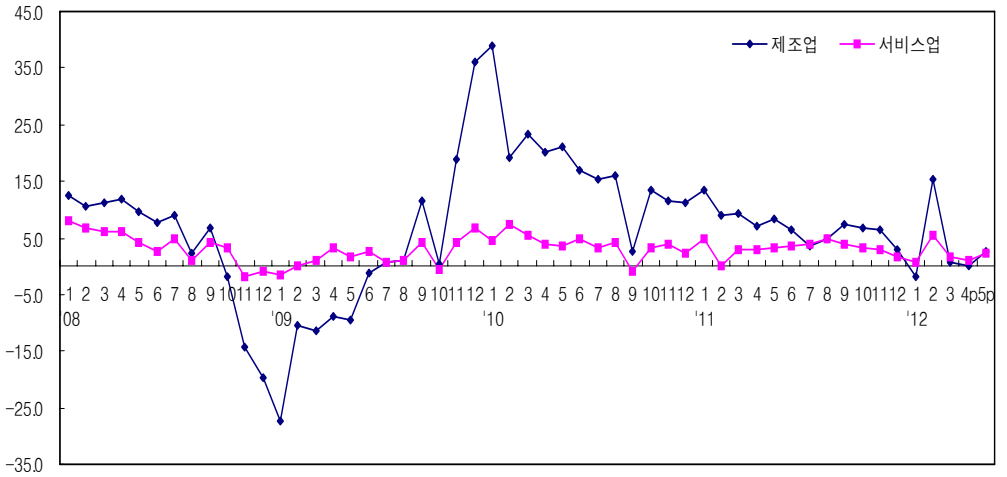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2012 6), 『2012년 5월 산업활동동향』.

〔그림 2〕 서비스업 업종별 생산 추이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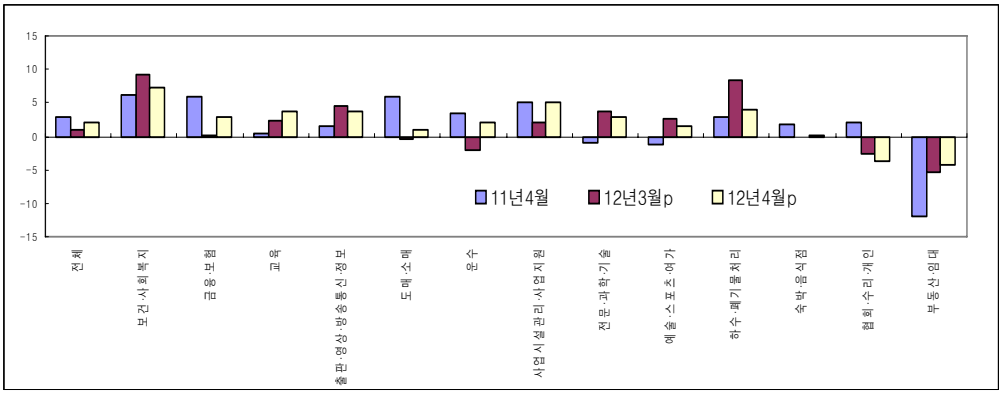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KOSIS.

(김복순, 노동정책분석실 책임연구원)

◈ 취업자 증가 지속

○ 2012년 2분기 중 경제활동인구는 25,844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407천 명(1.6%) 증가함.
  – 남성 경제활동인구는 15,014천 명으로 223천 명(1.5%) 증가하였고, 여성은 10,830천 명으로 184천 명(1.7%) 증가함.

○ 2012년 2분기 중 경제활동참가율은 62.3%로 전년동기대비 0.3%p 상승함.
  – 성별로 보면, 남성(74.0%)은 전년동기대비 0.2%p, 여성(51.0%)은 전년동기대비 0.2%p 상승함(그림 3 좌측 참조).

○ 2012년 2분기 중 고용률은 60.2%로 전년동기대비 0.3%p 상승함.
  – 남성의 고용률은 71.4%로 전년동기대비 0.3%p, 여성의 고용률은 49.5%로 전년동기대비 0.3%p 상승함(그림 3 우측 참조).

○ 2012년 2분기 중 취업자는 25,003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430천 명(1.8%)이 증가함.
  – 성별로 보면, 남성 취업자는 14,500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242천 명(1.7%)이 증가하였고, 여성 취업자는 10,502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88천 명(1.8%)이 증가함(그림 4 참조).

○ 2012년 2분기 중 실업자는 841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23천 명(-2.7%) 감소하였고, 실업률은 3.3%로 전년동기대비 0.1%p 하락함.

〈표 2〉 최근의 고용 동향

(단위 : 천 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2011					2012			
	1/4분기	2/4분기	6월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5월	6월
경제활동인구	24,488 (1.3)	25,437 (1.6)	25,592 (1.7)	25,269 (1.1)	25,202 (1.6)	24,873 (1.6)	25,844 (1.6)	25,939 (1.8)	25,939 (1.4)
참 가 율	59.9	62.0	62.4	61.5	61.1	60.1	62.3	62.5	62.4
취 업 자	23,459 (1.8)	24,572 (1.7)	24,752 (1.9)	24,483 (1.5)	24,462 (2.0)	23,927 (2.0)	25,003 (1.8)	25,133 (1.9)	25,117 (1.5)
고 용 률	57.4	59.9	60.3	59.5	59.4	57.8	60.2	60.5	60.4
실 업 자	1,028	865	839	786	740	947	841	807	822
실 업 률	3.9	3.4	3.3	3.1	2.9	3.8	3.3	3.1	3.2
비경제활동인구	16,392 (0.8)	15,559 (0.4)	15,441 (0.2)	15,847 (1.2)	16,014 (0.3)	16,495 (0.6)	15,669 (0.7)	15,579 (0.4)	15,622 (1.2)

주 :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고용률 = 취업자 / 생산가능인구*100
자료 : 통계청(2012. 7), 『2012년 6월 고용동향』.

- 남성 실업자는 514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9천 명(-3.6%) 감소하였고, 여성 실업자는 327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4천 명(-1.2%) 감소함.
- 실업률은 남성이 3.4%로 전년동기대비 0.2%p 감소하였고, 여성은 3.0%로 전년동기대비 0.1%p 증가함.

○ 2012년 2분기 중 비경제활동인구는 15,669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10천 명(0.7%) 증가함.

- 남성 비경제활동인구는 5,283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26천 명(0.5%) 증가하였고,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10,386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84천 명(0.8%) 증가함.

〔그림 3〕 성별 참가율(좌)과 고용률(우) 증감 추이

(단위 : %p, 전년동기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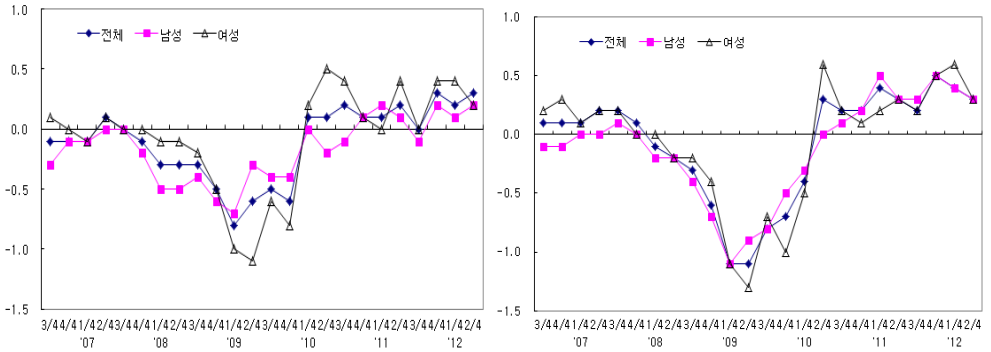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KOSIS.

〔그림 4〕 성별 취업자 증가율

(단위 : %, 전년동기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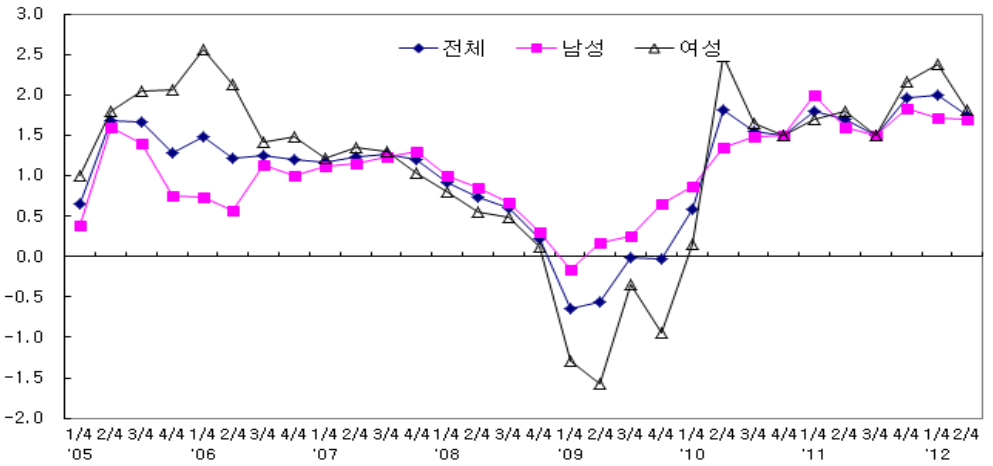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KOSIS.

–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는 187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41천 명 감소함.
–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중 특별한 사유 없이 그냥 쉬었다고 응답한 '쉬었음'은 1,363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71천 명(-4.9%) 감소하였고, 정규교육기관 재학, 입시학원,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수강을 포함하는 '재학·수강'은 4,220천 명으로 64천 명(-1.5%) 감소함.

◈ 제조업 감소 및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중심의 취업자 증가 지속

○ 2012년 2분기 중 산업별 취업자의 전년동기대비 증감을 보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291천 명, 3.4%), 전기·운수·통신·금융업(57천 명, 2.0%), 도소매·음식숙박업(139천 명, 2.6%), 건설업(33천 명, 1.9%) 등에서 증가한 반면, 제조업(-66천 명, -1.6%), 농림어업(-24천 명, -1.4%)에서는 감소함.

〔그림 5〕 산업별 취업자 증가율

(단위 : %, 전년동기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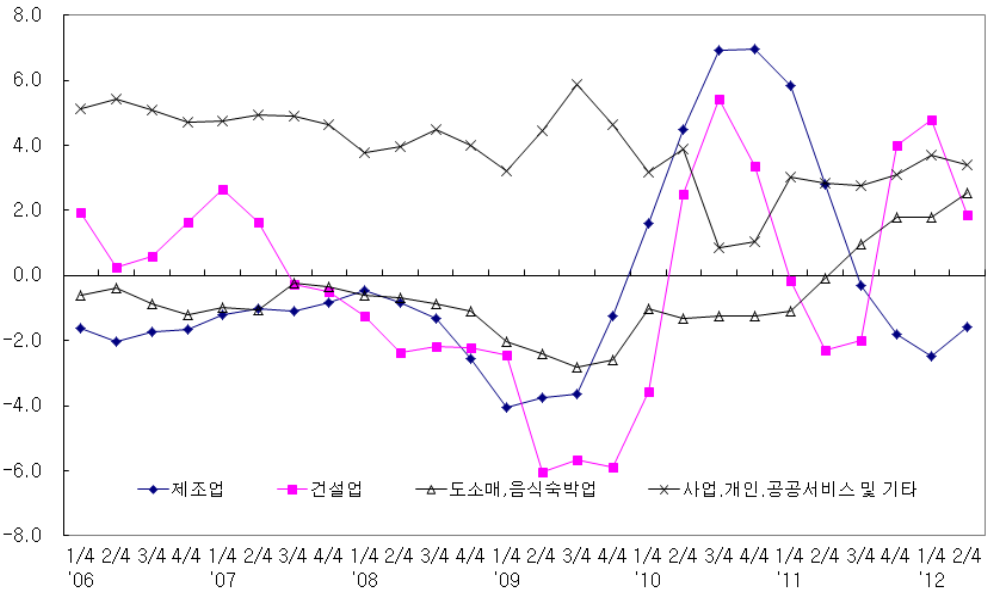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KOSIS.

〈표 3〉 산업별 취업자

(단위 : 천 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2011					2012			
	1/4분기	2/4분기	6월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5월	6월
전 산 업	23,459 (1.8)	24,572 (1.7)	24,752 (1.9)	24,483 (1.5)	24,462 (2.0)	23,927 (2.0)	25,003 (1.8)	25,133 (1.9)	25,117 (1.5)
농림어업	1,207 (-2.3)	1,736 (0.2)	1,790 (-1.6)	1,704 (-2.9)	1,521 (-1.5)	1,176 (-2.6)	1,713 (-1.4)	1,755 (-1.2)	1,770 (-1.2)
제조업	4,139 (5.8)	4,127 (2.8)	4,135 (2.9)	4,041 (-0.3)	4,056 (-1.8)	4,037 (-2.5)	4,061 (-1.6)	4,071 (-1.6)	4,084 (-1.2)
건설업	1,641 (-0.2)	1,774 (-2.3)	1,802 (-2.3)	1,755 (-2.0)	1,832 (4.0)	1,721 (4.8)	1,807 (1.9)	1,819 (1.8)	1,815 (0.8)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5,471 (-1.1)	5,457 (-0.1)	5,472 (0.9)	5,496 (1.0)	5,542 (1.8)	5,571 (1.8)	5,596 (2.6)	5,613 (3.0)	5,594 (2.2)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	8,097 (3.0)	8,529 (2.8)	8,580 (2.9)	8,473 (2.8)	8,486 (3.1)	8,398 (3.7)	8,820 (3.4)	8,872 (3.5)	8,840 (3.0)
전기·운수·통신 및 금융업	2,880 (1.6)	2,933 (3.6)	2,959 (4.9)	3,001 (6.6)	3,011 (5.5)	3,011 (4.5)	2,991 (2.0)	2,988 (2.1)	2,999 (1.3)

주 : 1)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2) 2009년부터 9차 개정 산업분류를 적용.
3)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는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부동산 및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을 포함.

자료 : 통계청(2012. 7), 『2012년 6월 고용동향』.

◈ 자영업자 증가 지속

○ 2012년 2분기에 비임금근로자는 7,154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50천 명(2.1%) 증가하였고, 임금근로자는 17,849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281천 명(1.6%) 증가함.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11,059천 명으로 379천 명(3.5%) 증가하였고, 임시근로자는 5,114천 명으로 73천 명(1.4%) 증가하였으며, 일용근로자는 1,675천 명으로 171천 명(-9.3%) 감소함.
- 상용근로자 중심으로 임금근로자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음(그림 6 좌측 참조).
- 감소를 지속하던 자영업자는 2011년 8월 이후 증가를 지속 중임.

〈표 4〉 종사상 지위별 및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단위 : 천 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2011					2012			
	1/4분기	2/4분기	6월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5월	6월
전 체	23,459 (1.8)	24,572 (1.7)	24,752 (1.9)	24,483 (1.5)	24,462 (2.0)	23,927 (2.0)	25,003 (1.8)	25,133 (1.9)	25,117 (1.5)
비임금근로자	6,542 (-1.5)	7,004 (-0.3)	7,032 (-0.8)	6,965 (-0.4)	6,878 (1.5)	6,650 (1.6)	7,154 (2.1)	7,198 (2.3)	7,185 (2.2)
자영업주	5,399 (-2.1)	5,657 (-0.7)	5,668 (-0.9)	5,680 (0.6)	5,639 (2.3)	5,548 (2.8)	5,830 (3.1)	5,846 (3.3)	5,837 (3.0)
무급가족종사자	1,143 (1.7)	1,348 (1.5)	1,364 (-0.2)	1,285 (-4.7)	1,239 (-2.0)	1,102 (-3.6)	1,324 (-1.8)	1,351 (-1.7)	1,348 (-1.2)
임금근로자	16,917 (3.2)	17,568 (2.5)	17,720 (3.1)	17,518 (2.3)	17,585 (2.2)	17,277 (2.1)	17,849 (1.6)	17,935 (1.8)	17,932 (1.2)
상용근로자	10,413 (6.2)	10,681 (6.2)	10,716 (6.2)	10,731 (5.6)	10,820 (4.8)	10,825 (4.0)	11,059 (3.5)	11,064 (3.3)	11,157 (4.1)
임시근로자	4,804 (-1.8)	5,041 (-2.7)	5,132 (-0.6)	5,072 (-1.5)	5,042 (-0.2)	4,914 (2.3)	5,114 (1.4)	5,153 (1.8)	5,094 (-0.7)
일용근로자	1,701 (0.1)	1,846 (-3.3)	1,872 (-3.4)	1,716 (-5.7)	1,723 (-6.3)	1,538 (-9.6)	1,675 (-9.3)	1,718 (-7.4)	1,681 (-10.2)
36시간 미만	3,246 (-33.1)	3,210 (0.4)	3,179 (2.7)	8,464 (154.2)	3,217 (4.1)	3,313 (2.1)	3,284 (2.3)	3,290 (2.8)	3,196 (0.5)
36시간 이상	19,739 (11.7)	21,067 (1.7)	21,265 (1.8)	15,419 (-24.3)	20,937 (1.5)	20,081 (1.7)	21,425 (1.7)	21,564 (1.9)	21,613 (1.6)

주 :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자료 : 통계청(2012. 7), 『2012년 6월 고용동향』.

〔그림 6〕 임금근로자(좌) 및 비임금근로자(우) 증가율

(단위 : %, 전년동기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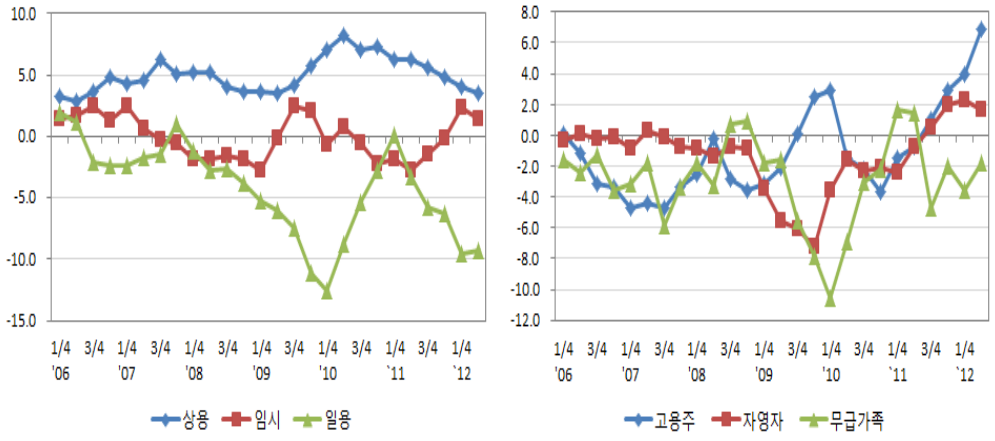

주 : 고용주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이고 자영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임.

자료 : 통계청, KOSIS.

○ 2012년 2분기 중 취업시간대별 취업자를 보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3,284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74천 명(2.3%) 증가하였고,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21,425천 명으로 358천 명(1.7%) 증가함.

- 18시간 미만 취업자 1,084천 명 중에서 일거리가 없거나 사업부진 등의 경제적 이유로 추가취업 및 전직을 희망하는 자는 117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천 명(-0.7%) 감소함.

◈ 전년 동기 대비 고졸 실업률 증가

○ 2012년 2분기 중 연령별 실업률은 전년동기대비 30대(3.2%, -0.3%p), 40대(2.0%, -0.1%p), 60세 이상(2.0%, -0.3%p)에서 감소함.

- 50대(2.0%, 0.0%p)는 변화 없고, 15~29세(8.1%, 0.2%p)는 증가함.
- 교육정도별 실업률은 전년동기대비 중졸 이하(2.2%, 0.1%p), 대졸 이상(3.5%, 0.1%p)에서는 증가하였고, 고졸(3.5%, -0.5%p)은 감소함.

○ 2012년 2분기 중 전체 실업자 841천 명을 과거 취업경험 유무로 살펴보면, 취업무경험 실업자는 48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3천 명, 취업유경험 실업자는 793천 명으로 27천 명 감소함.

〈표 5〉 연령별 · 교육수준별 실업자 및 실업률

(단위 : 천 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2011					2012			
	1/4분기	2/4분기	6월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5월	6월
전 체	1,028(4.2)	865(3.4)	839(3.3)	786(3.1)	740(2.9)	947(3.8)	841(3.3)	807(3.1)	822(3.2)
15~29세	372(8.8)	332(7.9)	320(7.6)	284(6.7)	292(7.1)	346(8.2)	341(8.1)	342(8.0)	323(7.7)
30~39세	237(4.0)	211(3.5)	205(3.4)	189(3.2)	171(2.9)	190(3.2)	188(3.2)	184(3.1)	180(3.0)
40~49세	167(2.5)	145(2.1)	142(2.1)	138(2.0)	131(1.9)	164(2.4)	135(2.0)	123(1.8)	141(2.1)
50~59세	133(2.7)	107(2.0)	103(1.9)	108(2.1)	94(1.8)	124(2.3)	112(2.0)	98(1.8)	113(2.0)
60세 이상	119(4.5)	70(2.3)	71(2.2)	67(2.1)	53(1.8)	124(4.4)	66(2.0)	60(1.7)	65(1.9)
중졸 이하	195(4.1)	112(2.1)	103(2.0)	119(2.3)	108(2.1)	187(4.0)	112(2.2)	103(2.0)	105(2.0)
고졸	465(4.6)	408(4.0)	424(4.2)	372(3.7)	349(3.5)	408(4.1)	356(3.5)	335(3.3)	365(3.6)
대졸 이상	369(3.8)	345(3.4)	312(3.1)	296(2.9)	284(2.8)	352(3.4)	373(3.5)	369(3.5)	352(3.3)
취업무경험실업자	52	45	47	45	44	58	48	51	43
취업유경험실업자	977	820	792	741	696	889	793	756	779

주 : ( )안의 수치는 실업률.
자료 : 통계청(2012. 7), 『2012년 6월 고용동향』.

(성재민, 노동정책분석실 책임연구원)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

◈ 2012년 4월 명목임금 상승률, 전년동월대비 4.4% 상승

○ 2012년 4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2,839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2,719천 원) 4.4% 상승함.

- 상용근로자의 경우 기본급 등을 포함한 정액급여는 전년동월대비 5.6% 상승해 2,437천 원을 기록함.
- 상용근로자의 초과급여 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2.4% 상승하여 183천 원을 기록하였고, 특별급여 증가율은 3.1% 상승하여 398천 원을 기록함.

  ※ 초과급여 : 연장(야근근로 포함)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는 급여
  특별급여 : 상여금, 성과급, 임금인상소급분, 학자금 등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특별한 급여
- 2012년 4월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정액급여, 초과급여, 특별급여 모두 상승하여 2011년 4월 대비 5.0% 상승한 3,018천 원을 기록함.
- 임시・일용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5.2% 상승한 1,239천 원의 임금총액을 기록함.

○ 2012년 1~4월 누계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2,996천 원으로 전년동누계(2,802천 원) 대비 6.9% 상승함.

- 상용근로자의 임금총액은 2011년 1~4월 누계 대비 7.0% 상승한 3,170천 원을 기록함.
- 상용근로자의 정액급여는 2011년 1~4월 누계 대비 5.8%, 초과급여는 3.9%, 특별급여는 13.9% 상승함.
- 임시・일용근로자는 2011년 1~4월 누계 대비 11.3% 상승한 1,287천 원의 임금총액을 기록함.

○ 2012년 4월 실질임금은 1.9% 증가함.

- 2012년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2010년 기준)을 감안한 실질임금 증가율은 1.9%를 기록함(그림 7 참조).
- 2012년 1~4월 누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임금 증가율은 3.9%를 기록함.

〈표 6〉 임금관련 주요 지표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 천 원, %, 2010=100.0)

		2009	2010	2011	2012			
					1~4월 누계	4월	1~4월 누계	4월
전체 근로자 임금총액		2,636 (2.6)	2,816 (6.8)	2,844 (1.0)	2,802 (0.5)	2,719 (1.3)	2,996 (6.9)	2,839 (4.4)
상용 근로자	임금총액	2,863 (2.2)	3,047 (6.4)	3,019 (-0.9)	2,962 (-1.3)	2,874 (-1.6)	3,170 (7.0)	3,018 (5.0)
	정액급여	2,139 (4.0)	2,234 (4.5)	2,341 (4.8)	2,308 (4.4)	2,309 (4.2)	2,442 (5.8)	2,437 (5.6)
	초과급여	175 (-2.2)	196 (12.2)	179 (-8.4)	170 (-7.8)	179 (-6.2)	177 (3.9)	183 (2.4)
	특별급여	550 (-2.8)	617 (12.3)	498 (-19.3)	484 (-20.2)	386 (-25.0)	551 (13.9)	398 (3.1)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총액		1,073 (1.9)	1,056 (-1.6)	1,215 (15.1)	1,156 (8.9)	1,177 (8.6)	1,287 (11.3)	1,239 (5.2)
소비자물가지수		97.1 (2.8)	100.0 (2.9)	104.0 (4.0)	103.0 (3.8)	103.4 (3.8)	106.0 (2.9)	106.0 (2.5)
실질임금증가율		-0.1	3.8	-2.9	-3.2	-2.4	3.9	1.9

주 :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은행, http://ecos.bok.or.kr/

〔그림 7〕 임금상승률 추이

(단위 : %, 2010=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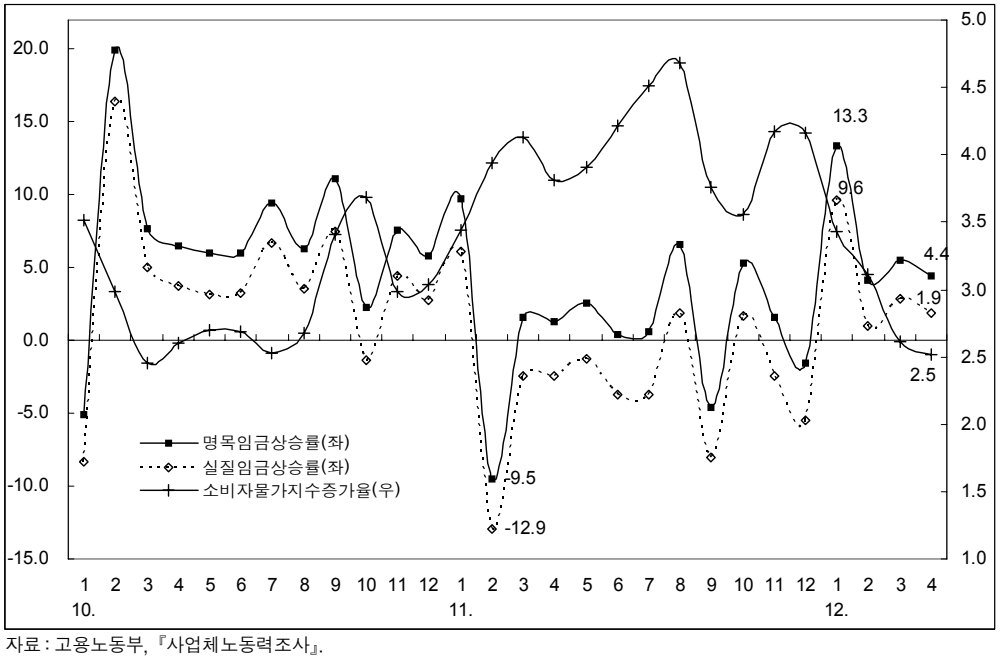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2년 4월 전 산업에서 임금상승률 증가

○ 2012년 4월 기준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의 임금 상승이 가장 높음.

– 2012년 4월 전년동월대비 산업별 월평균 임금총액의 상승률을 보면,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10.4%), 운수업(10.0%), 부동산업 및 임대업(9.3%) 등에서 임금상승률이 크게 나타남.

– 월평균 임금총액이 가장 많은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이며, 가장 적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으로 나타남.

※ 금융 및 보험업은 상용근로자의 정액급여 및 특별급여가 다른 산업에 비해 높고, 숙박 및 음식점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정액급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2012년 1~4월 누계 기준 부동산 및 임대업의 임금 상승이 가장 높게 나타남.

– 2012년 1~4월 누계 전 산업에서 임금이 증가함.

– 특히 부동산 및 임대업(10.0%), 운수업(9.9%), 제조업(9.6%) 등에서 두드러짐.

〈표 7〉 산업별 임금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 천 원, %)

	2010	2011	2012			
			1~4월 누계	4월	1~4월 누계	4월
전 산 업	2,816(6.8)	2,844(1.0)	2,802(0.5)	2,719(1.3)	2,996(6.9)	2,839(4.4)
광업	3,000(7.3)	3,309(10.3)	3,091(8.9)	2,878(3.2)	3,308(7.0)	3,065(6.5)
제조업	2,985(9.1)	3,034(1.6)	2,948(1.3)	2,852(-0.6)	3,231(9.6)	3,054(7.1)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5,455(7.0)	5,482(0.5)	4,815(0.9)	4,224(1.0)	4,935(2.5)	4,417(4.6)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	2,441(5.2)	2,488(1.9)	2,390(0.4)	2,332(2.7)	2,559(7.1)	2,522(8.2)
건설업	1,944(7.9)	2,181(12.2)	2,193(10.7)	2,135(16.5)	2,290(4.4)	2,177(2.0)
도매 및 소매업	2,769(7.1)	2,942(6.3)	2,850(2.4)	2,755(6.0)	3,078(8.0)	2,894(5.0)
운수업	2,381(5.4)	2,393(0.5)	2,308(-0.2)	2,370(0.5)	2,538(9.9)	2,606(10.0)
숙박 및 음식점업	1,462(5.0)	1,653(13.0)	1,609(11.9)	1,598(12.2)	1,688(4.9)	1,640(2.6)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	3,385(4.7)	3,692(9.1)	3,685(10.2)	3,487(10.4)	3,932(6.7)	3,611(3.5)
금융 및 보험업	4,680(4.7)	4,771(1.9)	4,898(0.5)	4,584(2.2)	5,147(5.1)	4,678(2.0)
부동산업 및 임대업	1,965(4.3)	2,017(2.6)	2,000(6.2)	2,002(11.1)	2,201(10.0)	2,189(9.3)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3,957(6.9)	3,870(-2.2)	3,725(-2.4)	3,735(-0.1)	4,018(7.9)	3,879(3.8)
사업서비스업	1,848(8.2)	1,700(-8.0)	1,664(-8.8)	1,640(-8.3)	1,759(5.7)	1,725(5.2)
교육서비스업	3,157(1.4)	2,985(-5.4)	3,084(-5.8)	2,837(-8.5)	3,195(3.6)	2,925(3.1)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594(2.4)	2,490(-4.0)	2,453(-4.5)	2,431(-3.4)	2,614(6.6)	2,525(3.9)
여가관련서비스업	2,107(0.9)	2,130(1.1)	2,085(1.2)	1,930(-2.7)	2,154(3.3)	2,131(10.4)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2,102(4.0)	2,185(3.9)	2,161(3.3)	2,129(5.7)	2,236(3.5)	2,171(2.0)

주 : 1) 전체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총액.
2)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3) 9차 산업분류 기준.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2년 4월 사업체 전 규모에서 임금상승률 증가

○ 2012년 4월 사업체규모별 상용근로자 명목임금 상승률은 5~299인 규모와 300인 이상 사업체 모두에서 증가함.

- 상용근로자 5~299인 규모의 상용임금총액은 2012년 4월 기준 2,717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5.6% 상승하였으며, 정액급여(5.9%), 초과급여(5.7%), 특별급여(2.1%) 모두 증가한 영향임.
- 300인 이상 사업체의 2012년 4월 상용임금총액은 4,121천 원으로 2011년 4월 대비 2.8% 상승하였으며, 이는 정액급여(3.9%)와 특별급여(2.0%)의 상승에 기인함.
- 반면, 300인 이상 규모의 초과급여(-5.0%)는 감소함.

○ 2012년 1~4월 누계 사업체규모별 상용근로자 명목임금 상승률은 전 사업체에서 증가

- 상용근로자 5~299인 규모의 임금상승률(6.6%)과 300인 이상 규모의 임금상승률(5.7%)은 모두 플러스 증가를 기록함.
- 그러나 300인 이상 규모의 초과급여는 마이너스 상승(-0.8%)을 함.

〈표 8〉 사업체규모별 상용근로자 · 비상용근로자 임금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 천 원, %)

		2010	2011	2012			
				1~4월 누계	4월	1~4월 누계	4월
전 규모 (5인 이상)	상용임금총액	3,047(6.4)	3,019(-0.9)	2,962(-1.3)	2,874(-1.6)	3,170(7.0)	3,018(5.0)
	정액급여	2,234(4.5)	2,341(4.8)	2,308(4.4)	2,309(4.2)	2,442(5.8)	2,437(5.6)
	초과급여	196(12.2)	179(-8.4)	170(-7.8)	179(-6.2)	177(3.9)	183(2.4)
	특별급여	617(12.3)	498(-19.3)	484(-20.2)	386(-25.0)	551(13.9)	398(3.1)
	비상용임금총액	1,056(-1.6)	1,215(15.1)	1,156(8.9)	1,177(8.6)	1,287(11.3)	1,239(5.2)
5~299인	상용임금총액	2,699(5.5)	2,675(-0.9)	2,624(-1.4)	2,574(-0.6)	2,798(6.6)	2,717(5.6)
	정액급여	2,082(4.3)	2,204(5.9)	2,171(5.5)	2,180(5.5)	2,304(6.1)	2,310(5.9)
	초과급여	176(13.6)	150(-14.5)	143(-14.3)	149(-13.3)	150(5.1)	157(5.7)
	특별급여	441(8.4)	321(-27.3)	311(-29.0)	245(-30.3)	344(10.7)	250(2.1)
	비상용임금총액	1,059(-1.6)	1,216(14.8)	1,156(9.1)	1,179(7.9)	1,296(12.1)	1,250(6.0)
300인 이상	상용임금총액	4,291(9.1)	4,273(-0.4)	4,252(1.0)	4,009(-2.4)	4,496(5.7)	4,121(2.8)
	정액급여	2,779(5.2)	2,842(2.3)	2,834(2.8)	2,795(1.7)	2,934(3.5)	2,903(3.9)
	초과급여	268(9.6)	286(6.7)	275(10.6)	292(12.9)	272(-0.8)	277(-5.0)
	특별급여	1,245(18.7)	1,146(-8.0)	1,144(-5.2)	922(-16.2)	1,290(12.8)	941(2.0)
	비상용임금총액	1,025(-0.3)	1,208(17.8)	1,154(6.7)	1,150(16.7)	1,180(2.3)	1,122(-2.5)

주 :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그림 8〕 상용근로자 사업체규모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

(단위 :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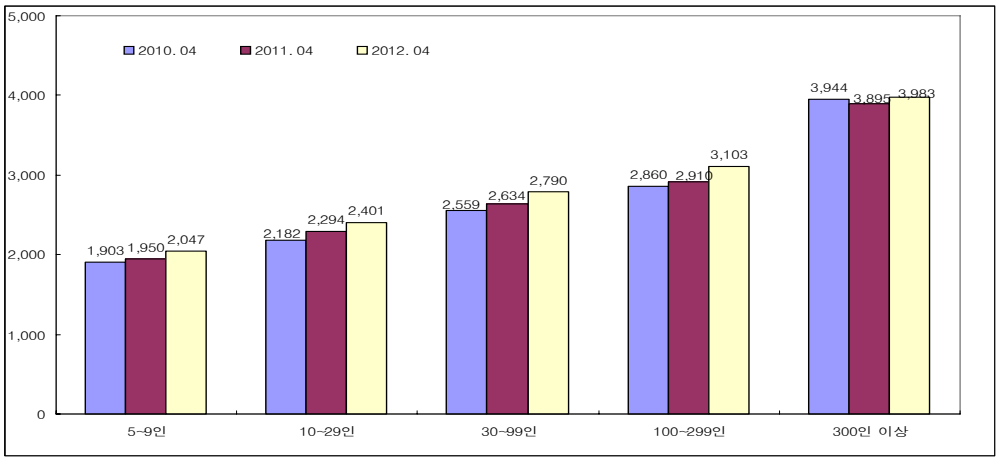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2년 6월 협약임금 인상률 5.2%

○ 2012년 6월 협약임금 인상률은 5.2%를 기록함.

– 2012년 6월 임금총액 기준 협약임금 인상률은 5.2%로 2011년 6월 인상률(5.1%)에 비해 0.1%p 상승함.

〔그림 9〕 협약임금 인상률 추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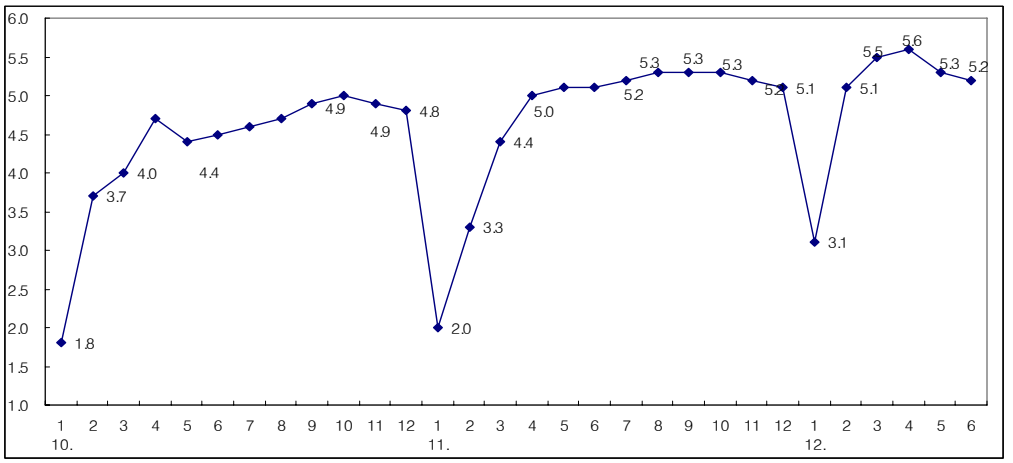

주 : 1) 협약임금 인상률이란 1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사가 협약으로 정한 임금인상률로서 초과급여, 특별상여금 등 변동성 급여는 제외됨. 따라서 실제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명목임금의 상승률과는 다름.

2) 월별 협약임금 인상률은 당월분이 아니라 당월까지 누계분 인상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e-나라지표, www.index.go.kr

◈ 2012년 4월 근로시간, 4.8% 감소

○ 2012년 4월 근로시간은 전년동월대비 4.8% 감소함.

– 2012년 4월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 근로시간은 172.4시간을 기록하여 전년동월(181.0시간)에 비해 8.6시간(4.8%) 감소함(그림 10 참조).

– 근로시간의 감소는 2011년 4월에 비해 월력상 근로일이 1일(선거일) 적은 데 기인함.

○ 2012년 1~4월 누계 근로시간은 전년동기대비 0.2% 감소함.

– 2012년 1~4월 누계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 근로시간은 174.1시간을 기록하여 전년동누계(174.4시간)에 비해 0.3시간(0.2%) 감소함.

〔그림 10〕 내역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

(단위 :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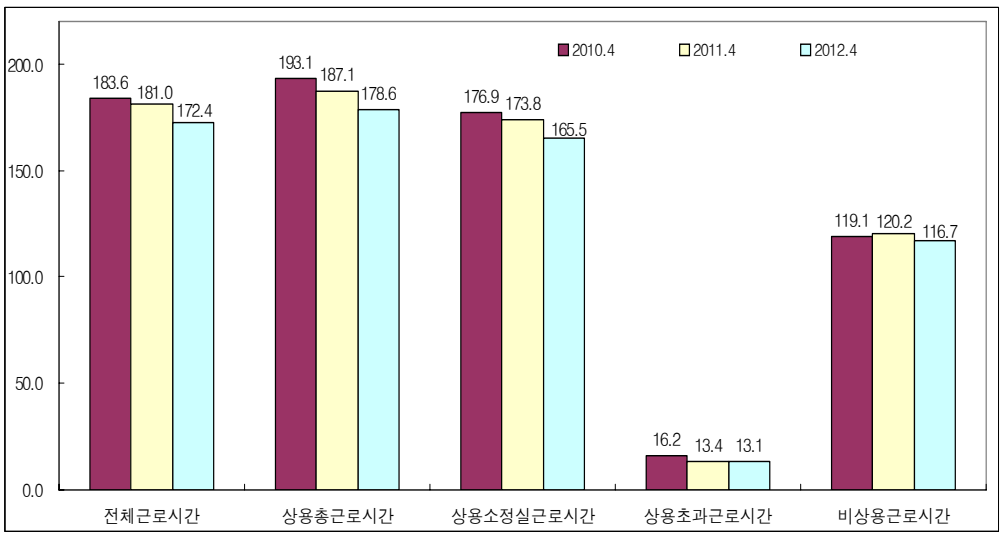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2년 4월 전 산업에서 근로시간 감소

○ 2012년 4월 모든 산업에서 근로시간이 감소함.

– 2012년 4월 산업별 근로시간을 보면, 제조업(187.2시간, -4.6%),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174.5시간, -7.3%) 등 전 산업에서 근로시간이 감소함.

– 2012년 4월 산업별 월평균 근로시간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190.7시간)이 가장 길었으며, 교육서비스업(145.3시간)이 가장 짧은 업종으로 나타남.

〈표 9〉 산업별 월평균 근로시간 추이(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 시간, %)

	2010	2011	2012			
			1~4월 누계	4월	1~4월 누계	4월
전 산 업	176.7(0.3)	176.3(-0.2)	174.4(-0.7)	181.0(-1.4)	174.1(-0.2)	172.4(-4.8)
광업	188.1(0.3)	186.9(-0.6)	182.8(-1.3)	191.1(-1.1)	185.2(1.3)	184.3(-3.6)
제조업	192.1(1.9)	190.6(-0.8)	188.4(-0.9)	196.3(-2.1)	186.7(-0.9)	187.2(-4.6)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176.9(-0.6)	177.1(0.1)	176.0(0.0)	188.2(0.7)	175.1(-0.5)	174.5(-7.3)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	192.9(-0.6)	186.2(-3.5)	183.1(-4.5)	190.8(-4.1)	184.3(0.7)	183.8(-3.7)
건설업	146.1(-0.7)	153.9(5.3)	154.6(4.5)	159.8(4.6)	151.7(-1.9)	147.3(-7.8)
도매 및 소매업	177.2(-1.0)	175.1(-1.2)	172.9(-1.6)	179.7(-3.3)	173.4(0.3)	172.3(-4.1)
운수업	184.6(0.1)	181.6(-1.6)	177.4(-3.4)	183.2(-2.5)	180.9(2.0)	178.9(-2.3)
숙박 및 음식점업	163.7(-0.4)	186.2(13.7)	183.3(13.6)	192.3(16.8)	186.7(1.9)	189.3(-1.6)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	166.2(-0.4)	164.5(-1.0)	162.2(-2.3)	168.6(-4.2)	162.4(0.1)	161.7(-4.1)
금융 및 보험업	165.3(-0.9)	163.6(-1.0)	160.6(-2.8)	166.1(-5.1)	162.2(1.0)	158.0(-4.9)
부동산업 및 임대업	200.4(-0.8)	194.2(-3.1)	192.9(-3.6)	194.7(-5.5)	194.2(0.7)	190.7(-2.1)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66.3(-0.8)	166.2(-0.1)	163.6(-1.3)	170.2(-2.7)	164.3(0.4)	161.7(-5.0)
사업서비스업	180.1(0.6)	172.1(-4.4)	168.1(-5.6)	173.8(-6.1)	172.5(2.6)	170.5(-1.9)
교육서비스업	149.9(-2.5)	152.9(2.0)	150.6(0.7)	155.5(-0.3)	150.2(-0.3)	145.3(-6.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76.5(0.1)	173.5(-1.7)	171.8(-1.8)	178.8(-2.8)	173.6(1.0)	172.6(-3.5)
여가관련서비스업	158.7(-1.8)	157.1(-1.0)	154.9(-1.5)	161.3(-1.9)	155.9(0.6)	157.7(-2.2)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173.9(-0.9)	173.6(-0.2)	173.3(-0.3)	179.2(0.1)	168.6(-2.7)	169.3(-5.5)

주 : 1) 전체 임금근로자 기준.
2) (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
3) 9차 산업분류 기준.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2년 1~4월 누계 대부분 산업에서 근로시간이 증가함.

- 2012년 1~4월 누계 산업별 근로시간을 보면, 사업서비스업(172.5시간, 2.6%), 운수업(180.9시간, 2.0%), 숙박 및 음식점업(186.7, 1.9%) 등에서 근로시간이 증가함.
- 반면, 건설업(151.7시간, -1.9%), 제조업(186.7시간, -0.9%) 등에서 근로시간이 감소함.

◈ 2012년 4월 전 규모 사업체에서 근로시간 감소

○ 2012년 4월 사업체규모별 근로시간은 전체 모두 감소함.

- 상용근로자 5~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71.4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4.1%, 10~2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68.7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6.6%, 30~9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77.6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3.7%, 100~29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77.7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3.3%, 300인 이상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69.1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4.8% 감소함(그림 11 참조).

○ 한편 2012년 1~4월 누계 사업체규모별 근로시간은 10~29인을 제외한 모든 규모에서 증가함.

- 상용근로자 5~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72.6시간으로 전년동누계대비 0.2%, 30~9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78.2시간으로 전년동누계대비 0.8%, 100~29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79.5시간으로 전년동누계대비 0.8% 증가하였고, 300인 이상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71.3시간으로 전년동누계와 동일함.
- 반면, 10~2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72.0시간으로 전년동누계대비 1.7% 감소함.

〔그림 11〕 규모별 월평균 근로시간 추이

(단위 :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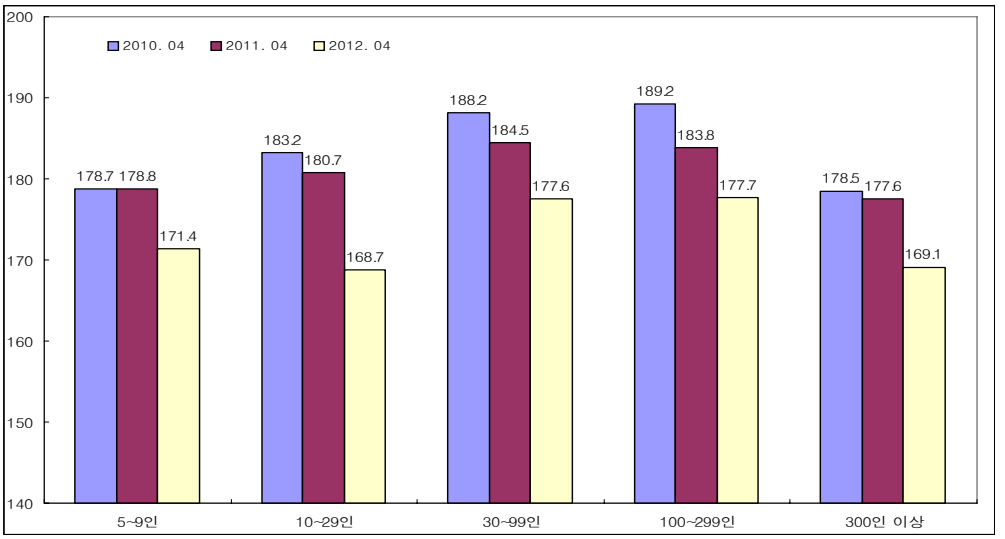

주 : 전체 근로자 기준.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정성미, 노동정책분석실 책임연구원)

노사관계 및 노동정책 동향

◈ MBC 노동조합, 파업 중단하고 7월 18일 업무 복귀

○ 언론노조 MBC본부는 지난 1월 30일부터 벌인 170일간의 파업을 중단하고 18일 오전 9시부터 업무에 복귀하기로 결정

- MBC 노동조합은 17일 조합원 총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파업을 잠정 중단하고 18일 오전 9시 업무에 복귀하기로 결정함.
  ※ 파업 참가 조합원 770명 중 600명 참석
  - 앞서 노조는 16일 대의원 대회를 열고 대의원 83명 중 참석자 66명의 만장일치로 17일 조합원 총회에 '파업 잠정 중단' 안건을 상정하기로 의결한 바 있음.
- 노조 관계자는 "다음 달 9일 임기가 시작되는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새 이사회가 김 사장 해임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낙하산 인사를 막도록 방송문화진흥회법이 올 가을 정기국회 때 개정될 것으로 보여 파업을 중단하기로 했고" 또 "논의 과정에서 끝까지 가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MBC를 조속히 복원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해 파업 중단을 선택한 것"이라고 밝힘.
- MBC 사측은 노동조합의 업무 복귀 결정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나타내면서 MBC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원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표명함.
- 한편 이에 앞서 여야는 지난 6월 29일 19대 국회 개원 합의문을 통해 "8월 초 구성될 새 방문진 이사회가 방송의 공적 책임과 노사관계에 대한 신속한 정상화를 위해 노사 양측 요구를 합리적 경영판단 및 법상식과 순리에 따라 조정·처리하도록 협조한다"고 밝힌 바 있음.

○ 노동조합이 업무에 복귀하였지만 파업에 따른 후유증도 예상될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향후 MBC 노사관계도 상당기간 불안정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

- 우선 파업 기간 중 발생한 조합원들에 대한 해고, 징계 등 파업과정에서 불거진 노사갈등이 쉽게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파업 기간 중 6명이 해고됐고, 정직 38명, 대기발령 54명 등 98명이 중징계를 받았음. 또 사측은 노조 집행부 16명에게 19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음.
- 또 파업 참여 노조원과 비참여 인력 간 직간접적인 충돌이 우려되고, 또 대체인력

으로 뽑은 계약직 앵커와 기자들과의 내부 갈등이 예상되는 등 방송 정상화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8월 초 새롭게 꾸려지는 방문진 이사회가 노동조합이 기대한 것처럼 김재철 사장 해임안을 의결할 것인지도 아직 불투명한 실정임. 이와 관련해 정영하 노조위원장도 "새 방문진 이사진이 김 사장 해임안을 내놓지 않으면 재파업도 불사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음.
- 한편 MBC 사측은 노동조합이 업무복귀를 선언한 17일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인사발령을 내면서 양측 사이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음. 회사 측은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미래경영실'과 세종시 출범에 대비한 '중부권 취재센터'를 신설하는 계획에 따라 인사발령 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하지만 노조는 인사발령 대상자 156명 중 50여 명은 파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조합원으로서, 이들을 자신이 수행해온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서에 배치하는 것은 보복적인 인사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음.

◈ 화물연대와 건설노조의 반복되는 파업

○ 화물연대가 6월 25일 오전 7시부터 총파업에 돌입, 닷새째인 29일 업무복귀

- 화물연대는 지난 6월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명박 정부가 2008년 약속한 표준운임제 법제화 등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25일 오전 7시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힘.
  - 화물연대의 파업은 지난 2003년, 2008년에 이어 4년 만에 벌어진 것으로,
  - 이들은 "치솟는 기름값과 낮은 운송료 때문에 화물노동자 대부분이 실업자나 빚쟁이로 전락하고 있다"며 "생존권 확보를 위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힘.

  ※ 앞서 화물연대는 지난 2월 조합원 투표를 통해 80.6%의 높은 찬성률로 '6월 이후 파업'을 결의한 바 있음.
- 노동계는 화물연대가 거듭해 파업을 벌이는 것은 화주와 운송회사, 운송노동자로 연결되는 화물운송 다단계 하청구조 때문이라 보고 있음. 이런 구조하에서는 화물운송 노동자들이 제대로 운임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임.
- 화물연대가 이번 파업에서 내건 핵심적인 요구사항은 ▲표준운임제 법제화 ▲화물운송 등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과 노동기본권 보장 ▲운송료 30% 인상 ▲기름값 인하 등임.
  - 화물연대의 핵심 요구조건은 표준운임제 법제화임. 지난 2008년 6월 파업 타

결 당시 정부가 합의한 사항인데도 지금까지 제도 도입을 미루고 있다는 것이 화물연대 측의 주장임. 이들은 운송업체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현행 '신고운임제' 대신 실제 비용과 화물노동자의 수입을 토대로 한 '표준운임제' 도입이 절실하다고 주장함. 이에 대해 정부는 표준운임제 위반업체 명단 공표와 같은 유도책만으로도 취지를 실현할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 없는 권고안 수준으로 표준운임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가진 것으로 알려짐.

- 화주사와 운송업체를 대상으로 한 운송료 인상 문제도 중요한 요구조건임. 화물연대는 2008년 이후 경유 가격이 24%가량 오른 반면 운임은 7%만 오르는데 그친 현실을 감안해 운송료 30% 인상과 면세유 지급을 요구함. 이에 대해 화주와 운송업계는 10% 이하의 운송료 인상만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면세유 지급 문제에 대해서도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과의 형평성을 따져볼 때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임.
- 이와 더불어 화물노동자들이 법적으로 운송업체와 계약관계에 있는 개인사업자 신분이어서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사회보험 등 각종 혜택도 배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신들과 같은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보호법안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화물연대는 파업 닷새째인 29일 업무에 복귀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이번 파업의 최대 쟁점이던 표준운임제 도입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불씨로 남겨짐.

- 화물연대와 컨테이너운송사업자협의회(CTCA)는 운송료 9.9% 인상에 합의했고, 화물연대는 합의안을 두고 조합원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67%가 찬성해 업무 복귀를 결정하게 됨.
- 운송료 협상은 타결됐지만 화물운송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해 주도록 강제하는 표준운임제 도입은 향후 과제로 남겨짐. 화물연대는 기름값 등을 고려해 화물노동자의 운임을 매년 법으로 정한 뒤 이를 어길 경우 화주나 운송회사를 처벌하자는 내용이 담긴 표준운임제를 요구해왔음. 이에 정부는 "표준운임제 법제화 원칙에는 찬성하지만 처벌조항을 넣는 것은 시장경제원리에 어긋난다"며 반대해 합의에 실패함.
- 이와 관련해 여야 정치권은 논평을 내고 화물노동자들이 적정한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는 표준운임제 도입을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공표

○ 전국건설노조도 6월 27~28일 이틀간 파업투쟁 전개

– 화물연대에 이어 전국건설노조가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27일부터 조합원 2만여 명이 참여하는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힘. 건설노조 관계자는 "산재보험조차 가입이 어려운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위해 화물연대와 연대파업을 진

행할 것"이라고 밝힘.

- 건설노조의 핵심 요구안은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임금 근절 ▲표준임대차계약서 의무화 ▲특수고용직 노동기본권 보장 등임.
  - 건설노동자들이 파업을 선언한 것은 체불임금과 계속되는 저임금 때문임. 건설사들의 경우 물가변동 등에 따라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지만 그 혜택이 건설노동자들에까지 내려오지 않고 있다는 게 이들의 불만임.
  - 또 이들은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표준운송료'와 비슷한 적정임대료를 요구하고 있음. 정부가 공사비를 책정하기 위해 만든 건설기계표준품셈(운임료)에 훨씬 못 미치는 임대료를 받고 일하지만 이마저 체불되는 경우가 많다고 불만을 토로함.
  - 이와 더불어 건설노조는 덤프트럭·굴착기·레미콘 운전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도 요구하고 있음.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특수고용직에 속해 4대보험은 물론 노동기본권을 전혀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임.
- 파업 이틀째인 28일 건설노조와 정부 간 주요 쟁점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산별차원의 총파업은 종료할 예정임. 하지만 건설노조는 지역 현장별로 운반비와 임대료 인상, 체불임금 해결 등을 위한 투쟁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임.
  - 먼저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금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하기로 함. 이 제도가 도입되면 건설노동자들의 임금이 체불됐을 때 우선 보증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됨.
  - 주요 쟁점이던 건설기계 적정임대료 보장을 위해 조만간 별도 협의체를 구성하고 실태조사를 벌이는 등 해결방안을 찾기로 합의함.
  - 또 건설장비 표준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종전보다 인상키로 했으며, 표준약관 사용 권장을 위해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검토키로 함.
- 한편 정치권과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화물연대와 건설노조 파업의 해결책을 촉구함.
  - 민주노총은 28일 화물운송 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정리해고자 복직, 최저임금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일일 경고파업을 단행함.
  -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30개 단체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연대와 건설노조의 요구는 노동자가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한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잘못된 법제도와 산업구조를 바꾸자는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함.
  - 정치권도 화물노동자들이 적정한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는 표준운임제 도입과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입법을 비롯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짐.

◈ 주요 완성차 노조를 비롯해 금속노조 총파업 전개

○ 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 7월 13일, 7월 20일 총파업 투쟁 전개
- 금속노조는 6월 26일 사용자단체와 산별 중앙교섭에서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7월 13일과 20일 각각 8시간(주야간 각각 4시간)씩 부분파업을 진행함.
- 앞서 금속노조는 7월 11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함.
  ※ 투표 결과, 조합원 13만 3,643명 중 11만 8,930명(89.0%)이 투표에 참가. 이 중 82.1%인 9만 7,667명이 찬성해 쟁의행위 가결
- 금속노조는 올해 산별교섭에서 ▲교대제 개편을 통한 심야노동 근절과 노동시간 단축 ▲원하청 불공정거래 근절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리해고 철폐 및 노동기본권 보장 등 4대 요구안을 제기함.

○ 이번 금속노조 총파업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지엠 등 주요 완성차 노동조합 참여
- 특히 현대차 노조의 이번 파업 참여는 4년 만에 이루어진 것임.
-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사측과의 9차례 교섭에서 사측이 만족할 만한 제시안을 내놓지 않았고, 이에 교섭결렬을 선언하고 파업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힘.
  - 현대차 노조는 ▲기본급 15만 1,699원 인상 ▲성과급으로 순익 30% 지급 ▲조건 없는 정년 60세 연장 등의 요구안을 제시한 상태임. 특히 올해 최대 현안인 주간연속 2교대제와 관련해 ▲근무시간 형태 ▲월급제 시행 ▲생산량 유지 여부 등을 두고 노사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음. 이와 관련해 노조는 “주간연속 2교대제나 비정규직 이슈 등은 수년 동안 논의돼 온 사안이지만 회사 측이 아직도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올해는 사측이 안건별로 시간을 끄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교섭지연 전술을 쓰는 것이 아닌가 의심마저 든다”고 주장함.
  - 이에 현대차 노조는 지난 4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쟁의발생을 결의했으며, 10일과 11일 이틀 동안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해 71.1%(조합원 4만 4,857명 중 투표 4만 979명, 찬성 3만 1,901명)의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함.
- 이에 대해 회사 측은 “노사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상급단체의 파업동력으로 내몰렸다”며 “지난 5월 10일 상견례를 포함해 총 9차례의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임금 및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 문제 등 주요 안건에 대한 충분한 논의

가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결렬을 선언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주장함.

- 기아자동차와 한국지엠 등 다른 완성차 업계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음.
  - 한국지엠 노조는 7월 2, 3일 조합원 투표를 통해 쟁의행위를 가결함. 7월 10일 조합원 5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주간조, 야간조 3시간씩 부분파업을 전개하였고, 13일 금속노조 파업투쟁에 동참함.
    ※ 투표율 87.8%, 찬성률 95.9%(총원 대비 84.2%)
  - 기아차 노조는 2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발생을 결의함. 10, 11일 전체 조합원 투표를 통해 67.3% 찬성률로 쟁의행위를 가결한 바 있음.

◈ 금융노조, 12년 만에 총파업 철회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7월 30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철회함.

- 금융노조는 7월 29일 오후 긴급 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30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연기한다고 공표함.
  - 금융노조는 "파업을 하루 앞둔 29일 오전, 농협 노사가 자율성 확보·고용안정 특별단협을 체결했다"며 "금융노조는 총파업 경고만으로도 메가뱅크·산은 민영화 저지, 농협 자율성 확보·고용안정 특별단협 체결 등 큰 성과를 거둬 파업을 잠정 연기한다"고 밝힘.
  - 하지만 노조는 "파업을 연기하지만 20대 대학생 무이자 학자금 지원, 신규인력 채용 확대를 통한 청년실업 해소, 비정규직 채용금지 및 제도 폐지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올해 임단협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총력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함.
- 금융노조가 총파업을 철회한 것은 농협과 정부 간의 이행약정(MOU) 문제와 우리금융 민영화 등의 문제가 일단락된 데 따른 것으로 보임.
  - 그간 금융노조는 농협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정부와의 MOU 체결과 우리금융 민영화를 반대하며 총파업을 준비해 왔음.
  - 그러나 7월 27일 우리금융 예비입찰이 유찰되고, 또 29일 농협 노사가 전격적으로 고용안정 등 7개 분야에서 합의함에 따라 총파업의 명분이 사라졌고, 이에 따라 노조의 파업 동력 또한 급격히 상실할 수밖에 없다는 것임. 노조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서 파업을 강행할 경우 내부 역량만 소진될 뿐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힘.

○ 앞서 금융노조는 7월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들의 요구안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7월 30일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며, 지난 19일에는 임시 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 35

개 지부가 모두 총파업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공표한 바 있음.

- 금융노조에 따르면 이번 파업은 2000년 금융권 구조조정에 맞서 벌인 파업 이후 12년 만에 이루어지는 금융권 총파업으로서,
  - 노조는 우선 26일 오후 7시 서울광장에서 총파업 대회를 열고 30일 하루 동안 파업투쟁을 벌인 뒤 사측의 반응에 따라 태업투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라고 밝힘. 그리고 8월 13일에는 2차 총파업도 예정하고 있다고 공표함.
- 금융노조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지난 4월부터 교섭을 벌여왔으나 교섭에 진전이 없자 지난 6월 초 노조가 교섭결렬을 선언하였음. 이에 따라 금융노조는 7월 11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 91.3%의 찬성률로 쟁의행위를 가결하였음.

  ※ 조합원 9만 3,042명 중 8만 388명 참가(86.4%), 7만 3,369명(재적 대비 78.9%, 투표자 대비 91.3%)이 찬성
- 금융노조는 ▲임금 7% 이상 인상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채용 금지 ▲58세에서 60세로 정년 연장 ▲대학생 20만 명 학자금 무이자 대출 ▲산업은행 기업공개(IPO) 중단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중단 등을 요구함.

◈ 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소야대' 구도 형성

○ 19대 국회의 전반기 환경노동위원회가 여소야대 구도를 띠게 되면서 각종 노동현안에 변화가 예상됨.

- 7월 9일 국회 환노위는 정원 15명에 새누리당 7명, 민주통합당 7명, 비교섭단체인 통합진보당 1명으로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침.
  - 여당 7명, 야당 8명(위원장 민주통합당 신계륜 의원)으로 이른바 여소야대의 구도가 형성된 것임.
- 노조법, 비정규직법, 최저임금법 등 주요 노동관계법 개정 관련 이슈뿐만 아니라 쌍용자동차 해고자 문제,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문제, 그리고 삼성전자 백혈병 문제 등 노동 현안들이 올 하반기에 논의될 예정임.
  - 야당이 추진하는 노조법 개정안의 핵심은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도와 교섭창구 단일화제도 폐지임. 민주통합당 홍영표 의원은 "타임오프에 대해서는 노조 전임자 임금을 자율에 맡기도록 하는 내용으로, 교섭창구 단일화에 대해서는 폐지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힘.
  - 비정규직법 개정안의 핵심은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사유 제한'임. 출산, 군입대, 병가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때만 기간제를 사용할 수 있게 하자는 것임.

- 또 야당은 최저임금 기준 하한선을 '전체 근로자 평균 정액 급여의 50%'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등 최저임금의 현실화 작업도 추진 중임.

– 한편 야당은 국회 환노위 내에 '쌍용자동차 해고자' 문제와 '삼성전자 백혈병' 문제를 다룰 산업재해 관련 특별소위원회 설치를 추진 중에 있음.

- 개별기업의 노사 문제라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에 근거한 것임.
- 하지만 여당인 새누리당은 특정 기업과 관련한 소위가 구성될 경우 재계가 반발할 것을 우려해 소위 구성에 유보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짐.

○ 국회의 노동개혁 입법 추진에 대해 노동계는 환영하는 입장인 데 반해 재계와 정부는 우려하는 분위기가 역력한 것으로 알려짐.

– 노동계는 그동안 추진해온 노조법, 비정규직법 등 주요 노동관계법 개정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법 개정 공세를 강화하여 친노동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것임을 천명함.

- 특히 양대노총은 노조전임자 수를 제한하고 있는 타임오프제도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제도가 노동3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오고 있었음.
- 한편 통합진보당 심상정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과 심야노동 철폐 등을 담은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 경영계는 여소야대의 국회 환노위가 친노동 입법경쟁의 장으로 변화할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함.

- 한국경총은 9일 성명서를 통해 "일자리와 기업의 인력 운용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고용·노동정책을 다루는 환노위의 주도권이 야권으로 넘어갔다"며 "새누리당이 환노위에 과반에 못 미치는 의원을 배정한 것은 여당이 합리적 노동정책을 포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강하게 비판함.
- 또 "그동안 노동선진화 정책으로 평가받던 타임오프제도나 복수노조 협상창구 단일화 등이 안착되는 시기에 이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노동정책이 논의될지 걱정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

– 정부도 국회 환노위의 여소야대 현상에 대해 우려하며 이미 정착단계에 있는 제도를 개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짐.

-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시행 1~2년 만에 나름 연착륙돼 가고 있는 제도에 대해 재론하는 것은 과거회귀적 발상"이라며, "야당이 추진 중인 노동관련법 개정 움직임이 혹시라도 국민의 뜻과 크게 괴리된다면 헌법상 주어진 재의요구를 포함해 필요한 모든 방안을 고려해 볼 생각"

이라고 밝힘.

- 또한 이 장관은 국회 환노위 내 '쌍용차·삼성' 특별소위 구성 움직임에 대해서도 "개별 사업장의 노사 문제에 정치권이 직접 개입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고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함.

◈ 고용노동부, 전국은행연합회와 임금체불 사업주 신용제재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고용노동부는 7월 24일 전국은행연합회와 임금체불사업주 제재를 위한 체불자료의 신용정보 활용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함.

- 이는 고용노동부가 악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의 체불자료를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하면 각 금융기관은 은행연합회에 수집된 체불자료를 활용하여 사업주의 신용도를 판단하게 한다는 것임.
- 체불자료 제공 대상은 자료 제공일 이전 3년 이내 금품 체불로 인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자료 제공일 이전 1년 이내 체불총액이 2천만 원 이상인 체불사업주임(근로기준법 제43조의3).
- 그렇지만 고용노동부는 선의의 체불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해 체불임금을 전액 지급하거나 체불임금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한 사업주는 신용제재 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체불 청산을 유도하는 데 주력하기로 함. 또 체불사업주의 사망, 파산, 사실상 도산 등 제재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신용제재 대상에서 제외하여 제재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의4).

○ 이에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1일 근로기준법을 개정(8월 2일 시행)하여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신용제재 제도를 도입한 바 있으며, 이번 협약 체결은 법 개정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임.

◈ 8월 2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가족돌봄휴직 제도 시행

○ 고용노동부는 7월 3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함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가족돌봄휴직 제도'가 오는 8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만 6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단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부터 적용)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대신 근로시

간을 단축하여 근무함으로써 일을 하면서 아이도 돌볼 수 있는 제도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지난 2008년 6월에 도입되었으나 그동안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수 있어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음. 앞으로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신청하면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게 됨.
  - 2012년 8월 2일부터 전 사업장에 적용됨.
  - 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줄여 근무하고 임금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받으며, 고용센터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받게 됨.
  -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계속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하였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용해야 함.

○ 가족돌봄휴직 제도

- 근로자가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 최대 90일의 무급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임.
  - 2012년 8월 2일부터는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에, 그리고 2013년 2월 2일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됨.
  - 가족돌봄휴직 기간 동안에는 급여가 지급되지는 않지만, 근속기간에는 포함되기 때문에 승진, 승급, 퇴직금 산정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음.
    ※ 가족돌봄휴직에 대한 사업주 지원 여부 및 지원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협의 중
  -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계속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다른 가족이 돌볼 수 있는 경우,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하였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용해야 함. KLI

(강병식, 노동정책분석실 전문위원)